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U-영등포통합관제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. 4. 30.
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4년 4월 9일

나. 제출자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4년 4월 22일

라. 상정일자: 제25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(2024. 4. 26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안전교통국장 이병순)

가. 제안이유

- 통합관제센터 출입자 통제 및 영상 정보의 보관·삭제의 조례를 개정하여 유관부서·기관 공무원 및 관제센터 운영 관계자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기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유관부서·기관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한 통합관제센터 출입자 통제 조항 개정(안 제14조제2항)
-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 명확화(안 제18조제3항)
- 별지 서식 추가(안 별지 제1호서식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이수형)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통합관제센터 출입자 통제 및 영상 정보의 보관·삭제의 조례를 개정하여 유관부서·기관 공무원 및 관제센터 운영 관계자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

○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14조제2항 단서에서는 유관 부서·기관 공무원의 원활한 업무 처리 등을 위하여 업무담당자 외에 통합관제센터를 출입·방문 시에 공문을 지참하여 그 신분과 방문 목적을 확인 후에 출입자 명부를 기재하는 것으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- 안 제18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는 “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” 특정한 영상정보에 한정하여 보관기간을 최대 90일 이내로 명시하였음.

○ 검토결과

- 먼저 안 제14조제2항 단서 조항에서는 유관 부서·기관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해당 단서를 신설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통합관제센터의 출입자 통제를 일부 완화하였는데,
- 이처럼 출입자 통제를 일부 완화하는 만큼 「개인정보 보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5조제6항 및 제29조에 명시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며,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득하지 않더라도 내부 방침으로 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을 수 있는 방문 목적’에 한하여 출입·방문을 허가하는 등의 명확한 기준을 세워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- 다음은 영상정보 보관기간에 대해 살펴보면, 안 제18조 제1항에서는 영상정보의 기본적인 보관기간은 “최대 30일 이내”로 명시하였으며,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예외사항을 규정하였음.
- 본 조례안에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제3호에만 단서를 신설하여

“특정한 영상정보에 한하여 최대 90일 이내로 보관할 수 있다”라고 규정하였는데, 이는 제1호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, 제2호의 경우 수사 또는 재판에 영상제공 시점 등 보관기간을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는 반면, 제3호의 “그 밖에 정당한 사유”는 조문 내용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보관기간을 특정할 수 없음에 따라 “특정 영상정보에 한하여” 보관기간을 일부 명확히 하고자 해당 단서를 신설한 것으로 보임.

-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「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」 제 41조제1항 본문에는 “개인영상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”라고 규정되어 있는 만큼 보관기간을 명시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.
- 다만, 법 제4조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는 “개인정보에 대한 열람(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) 및 전송을 요구할 권리”가 있으므로, 정보주체의 요청이 있을 시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등의 내부방침을 세워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.
- 따라서 검토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, 앞서 언급한 내부방침을 세워 안전조치 의무를 더욱 강화하고,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한다면, 본 조례안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: 수정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U-영등포통합관제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제330호	관련 번호
----------	-------	----------

제안연월일: 2024. 4. 26.

제안자: 전승관 의원 외 1명

1. 수정이유

- 특정한 영상정보 보관을 최대 90일 이내로 제한하는 단서조항은 구민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정함.

2. 수정내용

- 안 제18조제1항제3호 단서를 삭제함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U-영등포통합관제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U-영등포통합관제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8조제1항제3호 단서를 삭제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18조(영상정보의 보관 및 삭제)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에 대해 수집 후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3.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<단서 신설></p>	<p>제18조(영상정보의 보관 및 삭제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	<p>제18조(영상정보의 보관 및 삭제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2. 3.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U-영등포통합관제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U-영등포통합관제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유관부서·유관기관의 공무원이 공문을 지참하여 방문하였을 경우에는 그 신분과 방문 목적을 확인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제한(통제)구역 출입자 명부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8조(영상정보의 보관 및 삭제)</p> <p>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에 대해 수집 후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3.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</p>	<p>제18조(영상정보의 보관 및 삭제)</p> <p>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에 대해 수집 후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</p> <p>1. 2. 3. (생략)</p>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U-영등포 통합관제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30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: 2024. 4. .
제출자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통합관제센터 출입자 통제 및 영상 정보의 보관·삭제의 조례를 개정하여 유관 부서·기관 공무원 및 관제센터 운영 관계자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기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유관부서·기관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한 통합관제센터 출입자 통제 조항 개정(안 제14조제2항)
- 나.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 명확화(안 제18조제3항)
- 다. 별지 서식 추가(안 별지 제1호서식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개인정보 보호법」,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
- 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- 다. 협의사항
 - 1) 부패영향평가: 해당 없음
 - 2) 인권영향평가: 해당 없음
 - 3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 사무 없음
 - 4) 성별영향분석평가: 해당 없음
- 라. 입법예고(2024. 3.7.~3. 27./20일간) 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U-영등포통합관제센터
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U-영등포통합관제센터 설치·운영에
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유관부서·유관기관의 공무원이 공문을 지참하여 방문하였을 경우에는
그 신분과 방문 목적을 확인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제한(통제)구역 출입자
명부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.

제18조제1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특정한 영상정보에 한정하여 최대 90일 이내로 보관할 수 있다.

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~~제한(통제)구역 출입자 명부~~

연번	소속	성명	생년월일	문서번호	출입일시			확인자 (안내자)
					월일	시분	까지	
1			. .		/	:	:	
2			. .		/	:	:	
3			. .		/	:	:	
4			. .		/	:	:	
5			. .		/	:	:	
6			. .		/	:	:	
7			. .		/	:	:	
8			. .		/	:	:	
9			. .		/	:	:	
10			. .		/	:	:	
11			. .		/	:	:	
12			. .		/	:	:	
13			. .		/	:	:	
14			. .		/	:	:	
15			. .		/	:	:	
16			. .		/	:	:	
17			. .		/	:	:	
18			. .		/	:	:	
19			. .		/	:	:	
20			. .		/	:	:	
21			. .		/	:	:	
22			. .		/	:	:	
23			. .		/	:	:	
24			. .		/	:	:	
25			. .		/	:	: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4조(출입자 통제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업무담당자 외에 통합관계센터를 출입·방문하려는 사람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. <단서 신설></p> <p>③·④ (생략)</p> <p>제18조(영상정보의 보관 및 삭제)</p> <p>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에 대해 수집 후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3.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<단서 신설>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4조(출입자 통제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</p> <p>--. 다만, 유관부서·유관기관의 공무원이 공문을 자참하여 방문하였을 경우에는 그 신분과 방문 목적을 확인한 후에 별자 제1호서식의 제한(통제)구역 출입자 명부를 기재하는 것으로 같음할 수 있다.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8조(영상정보의 보관 및 삭제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</p> <p>--. 다만, 특정 영상정보에 한정하여 최대 90일 이내로 보관할 수 있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